보험료 특별할인 제도성 특별약관Ⅱ(2302)

제1조 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이 보험료 특별할인 제도성 특별약관Ⅱ(2302)(이하 '특별약관'이라 합니다)의 적용대상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상품에 한하며, 아래에 따라 적용합니다.

1. 2023년 2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계약에 한합니다.
2. 적용기간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으로 합니다.
3. 제1호 및 제2호의 할인 대상 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부가된 보장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제2조 (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료 특별할인은 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되는 적용대상의 보장보험료에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른 특별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
제3조 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